나경원 의원, **장애인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시리즈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 **4. 20**(목) |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나경원**

주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Korean Parents' Network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국회의원 **나 경 원**

나경원 의원, **장애인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시리즈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 **4. 20**(목) |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나경원**

주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Korean Parents' Network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CONTENTS

개 / 회 / 사

나경원 국회의원 6

환 / 영 / 사

윤종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8
박명애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10

축 / 사

정세균 국회의장 12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4

주 / 제 / 발 / 표

평생교육법 하위법령 개정방향 및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후속과제 19
– **김기룡**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지 / 정 / 토 / 론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63
– **김영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2. 평생교육법 시행령(안)과 주제발표에 대한 입장 71
– **한용구**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입장 83
– **박용연**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감사

4. 평생교육법 시행령(안)과 주제발표에 대한 장애인야학의 입장 89
– **조민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

5.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 대한 교육부의 입장 (1) 99
–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6.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 대한 교육부의 입장 (2) 103
– **양미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행정사무관

개회사



국회의원
나경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2017년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생교육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및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후속 과제' 발제를 맡아주신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님과 토론좌장 김삼섭 교수님,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김영일 교수님, 한용구 센터장님, 박용연 감사님, 조민제 사무국장님, 홍민식 국장님, 양미자 사무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5월「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체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 이후 반 년이 넘도록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과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미편성, 관련 인프라 부족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개선을 요청해 온 바, 이제 하위법령 제정은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하위법령 제정 마지막 단계에 앞서 더욱 내실 있는 법령 제정 및 제반사항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0.02%에 그치던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산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학령기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직업기술 등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입안되어,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마음을 다해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20

국회의원 **나 경 원**

환영사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윤종술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윤종술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바람 맞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오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나경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및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님과 활동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지난 20여 년 간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은 편의시설 미비,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부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낙후된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이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확충될 것이며, 일반평생교육시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지원 내용 등이 법률에 규정되지 못하고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기준, 지원 기준, 인력 배치 기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 역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알맞게 규정되어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안되는 하위법령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고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은 적극 수용하여, 해당 내용이 하위법령안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개정된「평생교육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님들, 전문가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20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윤종술**

환영사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박명애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박명애입니다. 우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인 4월 20일, 장애인 분야 중 가장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분야를 주제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나경원 의원님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님,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강복순 회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두 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지니게 되었고 이후 45년간 제도권 교육은 전혀 지원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후 마흔 일곱 살이 되어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이후 저는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장애를 지닌 것 자체가 나의 업이었고 배우지 못한 것도 장애인이기 때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흔 일곱에 처음으로 검정고시 교육을 배우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며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배우게 되며 장애를 가진 것도 배우지 못한 것도 나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나의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장애인야학의 교장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직을 맡으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고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교육에 대한 현실은 절망스럽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중 140만 명 이상이 아직도 중학교 이하 학력을 지니고 있고 배우지 못하였기에 취업을 할 수도 없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학령기 이후 성인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은 신체장애인도 발달장애인도 모두 갈 곳이 너무 부족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주는 곳이 드문 상황입니다.

평생교육법이 2016년 일부 개정되어 이제 오는 5월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에 관계된 당사자, 학계,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예산과 정책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당당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그날까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도 열심히 활동하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20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박 명 애**

축 사



국회의장
정세균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장애인의 날에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귀중한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의 주인공들이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장애인연금법 제정 등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고 바꾸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인의 삶의 질은 크게 나아졌다고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직업을 갖고,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도록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원하는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교육, 자립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 여가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도 집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장애인의 취업률도 높아지고, 소득수준도 향상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은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권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수많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 법률의 하위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이 시행된지 거의 30여 년이 되어가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거론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자체가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무려 250만여 명의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려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 집행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특수교육정책과에서만 담당하고 있으나, 이 부서는 학령기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고,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등도 딱히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지난 수 십 여 년 동안 그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교육부 내에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을 관장할 수 있는 장애인교육복지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단체 관계자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뜻 깊은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이 보장받는 그날까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으로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20

국회의장 **정세균**

축 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나경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님,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발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는「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4월 11일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이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교육 시설을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이번 평생교육법령 개정을 발판삼아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으며 자활 · 자립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서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20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

발 제

01 평생교육법 개정방향 및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후속과제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발제

평생교육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후속 과제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1. 서론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장애인 관련 법령에만 명시된 제한된 분야가 아닌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존립하는 의미있는 체계로서 그 위상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은 주변부가 아닌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주류화되고, 일반 평생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된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지난 2007년 전부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그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실시 장소를 각급학교로 국한하고 있으며,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역시 학교형태의 교육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의 다양한 평생교육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제한적 규정으로 비판받아 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

이에 따라 국회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장애인 평생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생교육법」내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 보완되어 지난 해 6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 인력 및 프로그램 등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이 포함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반 교육 환경 내에 주류화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분리가 아닌 통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학령기 중심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평생교육법」이라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관련 법률에 그 지원 체계가 명시됨으로써,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장애인과 관련된 제도 내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닌 입지가 그리 훌륭하지 않고, 평생교육 관련 제도 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입지는 더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은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이 우선 개정되어야 하고,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새로운 지원 체계 운영 방안 수립 등 교육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원고에서는 먼저 「평생교육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개정의 의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하위법령 제정 방향과 하위법령안을 제안하고,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평생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개정의 의의

2016년 6월 「평생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시켜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 평생교육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그 의의

구분	조항	개정 내용	개정의 의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신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확립
	[신설] 제9조(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의 참여 보장	[개정] 제10조(평생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제4항 개정	· 교육부장관 소속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장애인 교육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 정책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교육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 제고
	[개정] 제12조(시 · 도 평생교육협의회) 제4항	· 시 · 도지사 소속 시 · 도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 제고
	[개정] 제14조 (시 · 군 · 자치구평생 교육협의회) 제3항	· 시 · 군 · 자치구평생 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신설] 제19조의 2(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 국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둠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 차원의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신설]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규정을 이 조항으로 이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 · 도교육감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 기존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 기관 확충에 기여
	[신설] 제21조(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 운영 등) 제3항 제1호의 2	· 시 · 군 · 구평생학습관의 사업 범위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포함	·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에서도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신설] 제21조의 2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규정을 이 조항으로 이관	· 각급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각급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 개발 업무를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은 관할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 ·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일반 평생교육 전달 체계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	[개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3항	· 이 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의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 기대

이와 같이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의 참여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관련 조항이 수정 또는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개정된「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권고 수준에 불과했던 행·재정적 지원 주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한편, 개정된「평생교육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가 수립하여야 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13 ~ '17)은 4개 영역, 12개 추진 과제, 29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영역의 사각지대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과제 중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라는 세부 추진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력 보완 교육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관련 시설 등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 중심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어디에서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을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 "장애인정책종합5개년계획"등에 담을 것인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 따라서「평생교육법」개정으로 이와 같은 불명확한 경계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수립,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의 참여 보장

「평생교육법」에서는 국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에 기반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평생교육법」역시 기존 평생교육 정책 수립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명문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심의 등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평생교육에 관한 각종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시·도평생교육협의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가 시·군·자치구에 두는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생교육 정책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규정은 평생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자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 체계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누가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데 한계가 많았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보다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특히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역할은 기존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준용하되, 장애인 평생교육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업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업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수 업무, 발

달장애인의 평생학습 요구를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업무 등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역할 이외에도 각급학교, 평생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비롯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에서의 역할도 추가로 규정하였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각급학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들 기관 중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곳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유일하다. 그러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문해교육, 학교형태의 검정고시 교육 등 제한된 영역에서의 교육만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장애인 역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점을 고려해 본다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만으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그 명칭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변경한다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닐 수 있는 명칭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한 곳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시·군·구평생학습관에서도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될 수 있게 하였고,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도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거나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중 어느 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이와 같은 평생교육사를 어느 정도 배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 확보 과정에서의 이슈 중 하나로 누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인력인가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평생교육사 이외에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정인숙 외, 2013). 그러나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규정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력의 추가 배치에 관한 문제는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별도의 운영 매뉴얼 등에서 다루거나,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3. 평생교육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 및 하위법령안 제안

1) 개정 방향

「평생교육법」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확충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력이 양성, 배치되어야 한다. 하위법령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평

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이 규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이 하위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은데 반해,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또는 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김기룡, 나경은, 2015). 특히, 발달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다수가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직장생활에 대비하고, 낮 시간 동안에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낮 시간에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상생활기술, 사회적응기술, 직업준비기술 등 지역사회 참여 및 직업 획득에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위법령에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시설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위법령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고, 장애성인 학습자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하여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전통적인 교과학습과는 달리 지역사회의 문화를 학습하고, 지역사회의 주민과 함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 내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위법령에는 장애인이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설·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상의 적절한 공적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장애성인의 소득 수준이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강료를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나, 이는 지불 능력이 있는 일반 국민에게만 타당할 조치일 뿐이다. 발달장애와 같이 중증의 장애인의 경우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사항도 하위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하위법령 위임 범위 확인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표 2와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표 〉 평생교육법 개정 조항 중 하위법령 위임 사항

법률 조항 및 위임 내용	기존 하위법령	하위 법령에 규정해야 할 내용
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항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	· 없음	· 센터의 운영 주체(국립특수교육원) 명시 · 센터의 구체적인 임무 · 센터 배치 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 등과의 관계 및 협력 체계 구축 ·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 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보고 절차

<table>
<tr>
<td>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과 설비
기준(대통령령)</td>
<td>· 없음</td>
<td>·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시설 및
설비 기준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예산
지원의 범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절차 및 관련 서식</td>
</tr>
<tr>
<td>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대통령령)</td>
<td>·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able>
<tr><th>배치대상</th><th>배치기준</th></tr>
<tr><td>1. 진흥원,
시 · 도진흥원</td><td>○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td></tr>
<tr><td>2. 시 · 군 ·
구평생학습관</td><td>○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td></tr>
<tr><td>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 · 법인 또는 단체</td><td>○ 평생교육사 1명 이상</td></tr>
</table></td>
<td>·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의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기준</td>
</tr>
</table>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같은 위임 사항 이외에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이 삭제되고 이 내용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그 명칭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변경되었고, 기존 법령에 따른 등록, 운영비 지원, 변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책임 주체가 없어진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36개소 이상 운영(교육부, 2016)되고 있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불비(立法不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위법령 등 관련 법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원고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입법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생교육법」 하위법령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하위법령안 제안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과 기존 하위법령의 비교 결과를 「평생교육법」 조항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평생교육법」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소속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다루는 심의 내용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위원회에서는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도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4조 제4호를 신설(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이동)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령 제4조 개정안을 표 3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표 〉 평생교육법 제4조 개정안 비교표

평생교육법	시행령(기존)	시행령 개정안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 3. (생략) 〈신 설〉 4.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평생교육 기본계획 · 진흥정책의 수립 · 평가 · 개선 및 기반 조성 ·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장애인평생교육 기본계획·진흥정책의 수립·평가·개선 및 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4조 제4호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법 제19조의 2에서는 국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당초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운영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규정한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 산하에 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는 것으로 하는 법률 조항이 통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률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 제19조의2에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 하에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특수교육원은 대통령령인 교육부 직제에 설립근거를 둔 기관이므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관을 인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실의 체계자구검토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한 바 있다(19대 국회 제342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삭제되었지만, 국립특수교육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법률안의 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별도 심의가 없는 한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 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가 국립특수교육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 제19조의2의 제3항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두게 된다면,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의 사무에 이 센터의 업무가 포함되었으므로,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령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관장하는 조직이므로, 이 조직이 조기에 안착되고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행·재정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시행령안에 추가되어, 센터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일반 평생교육 전달체계와는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기존의 일반 평생교육 체계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반 평생교육 전달체계 내에서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그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시행령 조항 신설안을 표 4와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표 〉 평생교육법 제4조 개정안 비교표

평생교육법	시행령(기존)	시행령 개정안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 · 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 · 운영) ① 법 제19조의 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하부조직 및 정원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법 제20조의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행령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 또는 운영 주체를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으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

하고자 한다. 제2항에는 국립특수교육원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무를 담당함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 조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 있지만 이와 같이 제안한 것은 평생교육법의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보다 국립특수교육원 등 교육부의 소속기관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조직 안정성 및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산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12조의 2의 제3항에 반영하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일반 평생교육 전달체계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 제12조의 2의 제4항에 제안하였다.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의 사무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업무가 포함됨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의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개정안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제23조 개정안 비교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기존)	시행령 개정안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 · 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 · 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 · 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 · 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신설) 4.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 제4호를 신설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소속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고, 신설 기구 설립에 따른 공무원 정원이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립특수교육원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개정 사항을 제안하면 표 6과 같다.

〈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9조 개정안 비교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존)	시행규칙 개정안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 · 기획연구과 · 연수과 및 정보지원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 · 연수과장 및 정보지원과장은 장학관 · 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생략) 8.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9. (생략) ⑦ 〈신설〉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 · 기획연구과 · 연수과 · 정보지원과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 · 연수과장 · 정보지원과장 및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장은 장학관 · 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현행과 같음) 8.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9. (현행과 같음) ⑦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 · 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존)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제19조제2항 관련)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제19조제2항 관련)	
총계	46	총계	71
특정직 계	28	특정직 계	41
장학관	1	장학관	1
장학관 · 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	3	장학관 · 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	4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6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9
교육연구사	18	교육연구사	27
일반직 계	18	일반직 계	30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1	행정주사	2
사서주사	1	사서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	4
시설주사보	1	시설주사보	2
전산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행정서기	1	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1	행정서기보	1
운전서기보	2	운전서기보	3
공업서기보	1	공업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2
기계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립특수교육원의 직제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고려하여 센터장을 과장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정보지원과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7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 사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을 신설하여 법 제19조의 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신설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3개의 부서 체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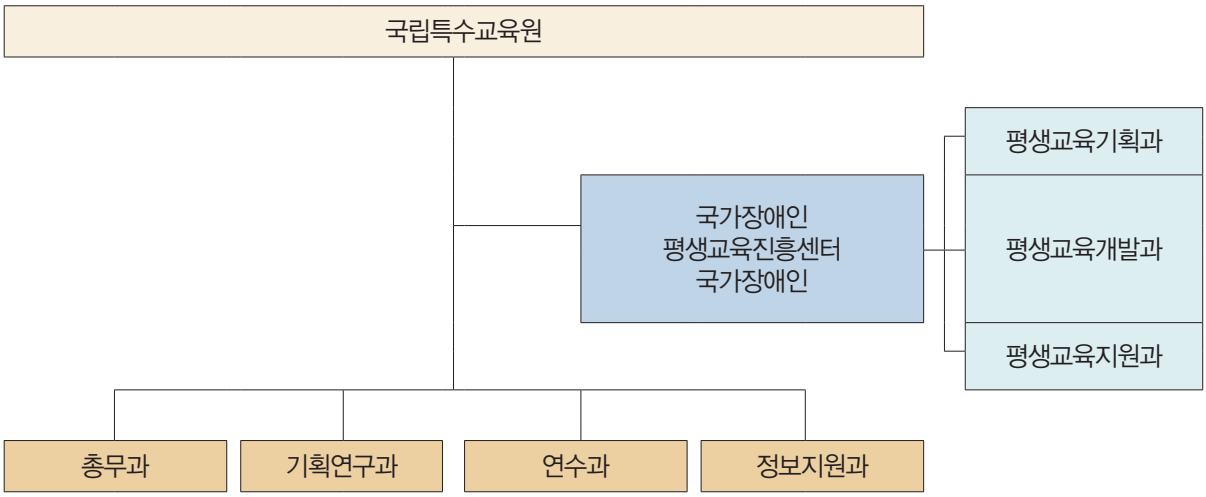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미 4개의 부서(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부서와는 별도로 원장 직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 산하에 3개의 부서(과)를 설치·운영하는 조직 개편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부서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기획과는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연구, 장애인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일반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평생교육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과의 협력 등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둘째, 평생교육개발과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도구 개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 련된 연구 및 개발 업무를 관장한다.

셋째, 평생교육지원과는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양성, 기존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공무원 의사소통 교육,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평생교육시설 컨설팅 및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평생교육 사업 수행 기관의 질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상과 같이 국립특수교육원에 새롭게 설치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법률에서 규정한 다양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어도 3개 이상의 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각 부서에는 적어도 8명 이상의 연구직,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공무원이 증원될 필요가 있으며, 25명에 대한 직위, 직급 및 직렬별로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개정안에 제안하였다.

(3)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등록에 관한 사항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이 각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설치 기준과 등록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각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이 법 제20조의2로 이관되었으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도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도 교육부장관의 책무이므로,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도 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를 고려해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크게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만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을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성인장애인에게 문해교육 또는 학력보완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성인장애인에게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외에 평생교육프로그램 6진 분류에 따라 기초문해교육 또는 한글문해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 영역을 담당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유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한 평생학습의 요구를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도 분류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시설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기존의 평생교육시설과는 그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기존 평생교육시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역시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은 사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등록 절차를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명칭, 위치, 운영규칙 등의 변경 사항 발생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저변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법 제20조의 2에 따른 시행령 조항 신설안을 표 7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표 〉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 위임사항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평생교육법	시행령(기존)	시행령 개정안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시 · 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시 · 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67조의 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운영)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성인장애인에게 문해교육 또는 학력보완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3.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성인장애인에게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4.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영 제67조의3제1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3호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4호에 따른 그밖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가. 49.5제곱미터 이상의 수업실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라. 관리실 마.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평생교육법	시행령(기존)	시행령 개정안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영 제67조의3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실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라.「특수학교 시설 · 설비 기준령」제5조에 따른 안전 및 편의시설 · 설비
	〈신설〉	제67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 운영규칙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관할 지역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유형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 · 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 · 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기존)	시행령 개정안
	〈신설〉	제67조의 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20조의2 및 영 제67조의 4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 시설 · 설비의 설치 내역 6. 운영규칙
	〈신설〉	제67조의 6(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부담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1. 시설 설비비 2. 시설 운영비 3. 강사 및 보조인력 운영 경비 4. 행정 사무 또는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 5. 교재 · 교구비 6. 실험 · 실습 또는 현장학습 · 체험활동 경비 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에 따른 이동 지원 경비 8. 종일제를 운영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급식 또는 간식 경비 9.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에 따른 편의시설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10.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행령 제67조의 3을 신설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설·설비 기준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제

시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제67조의 3의 제2항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시설·설비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학교형태, 지역사회중심 및 그밖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기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설·설비 기준을 제안하였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서울시가 설치·운영 중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요건(최소 500제곱미터 이상, 수업실 5실 이상)을 참고하여 제안하였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문제행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안하였다.

한편, 시행령 제67조의 4 및 제67조의 5를 신설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이 기준은 기존 「평생교육법」상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준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제67조의 6을 신설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운영경비 지원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한편,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관련 법률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설 설비 등 물리적 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 교·강사 및 사무인력 인건비 등 인적 자원 구축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프로그램 비용 등 대부분의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경비 보조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경비 지원의 범위를 시설 설비비, 시설 운영비, 강사 및 보조인력 운영 경비, 행정 사무 또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교재·교구비, 실험·실습 또는 현장학습·체험활동 경비, 이동 지원 경비, 종일제 운영시 급식 또는 간식 경비, 편의시설 또는 의사소통 지원 비용 등으로 확대 제안하였다.

(4)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에는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군·구 평생학습관에서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문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의 필요성이 지난 10여년 이상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시·군·구 평생학습관 차원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확대되지 못해 왔다. 따라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전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5%이상을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장애인 의무평생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정인숙, 2005).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할당제도 도입을 통해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려면 적절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표 8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표 〉 평생교육법 제21조의 위임사항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평생교육법	시행령(기존)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시 · 군 · 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 운영 등) ① 시 · 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 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제12조의 3(시 · 군 · 구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① 법 제21조제3항제1의2호 규정에 따라 시 · 도교육감 및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 운영 중인 평생학습관에서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 · 도교육감 및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행령 제12조의 3을 신설하여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전체 프로그램의 5% 이상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안하였다.

(5)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법 제26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

관 및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이를 고려하여 기존 시행령 제22조가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평생교육시설에 비해 보다 강화된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표 9와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표 〉 평생교육법 제26조의 위임사항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table>
<tr><th>평생교육법</th><th>시행령(기존)</th><th>시행령 개정안</th></tr>
<tr>
<td>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 · 군 · 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td>
<td>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able>
<tr><th>배치대상</th><th>배치기준</th></tr>
<tr><td>1. 진흥원, 시 · 도진흥원</td><td>○ (생략)</td></tr>
<tr><td>2. 시 · 군 · 구평생학습관</td><td>○ (생략)</td></tr>
<tr><td>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 · 법인 또는 단체</td><td>○ (생략)</td></tr>
</table>
</td>
<td>·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 ---------- ---------- ---------- ---------- ----------
<table>
<tr><th>배치대상</th><th>배치기준</th></tr>
<tr><td>1. 진흥원, 시 · 도진흥원</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td><td>○ 정규직원 1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1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td></tr>
<tr><td>3. 시 · 군 · 구평생학습관</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 · 법인 또는 단체</td><td>○ (현행과 같음)</td></tr>
</table>
</td>
</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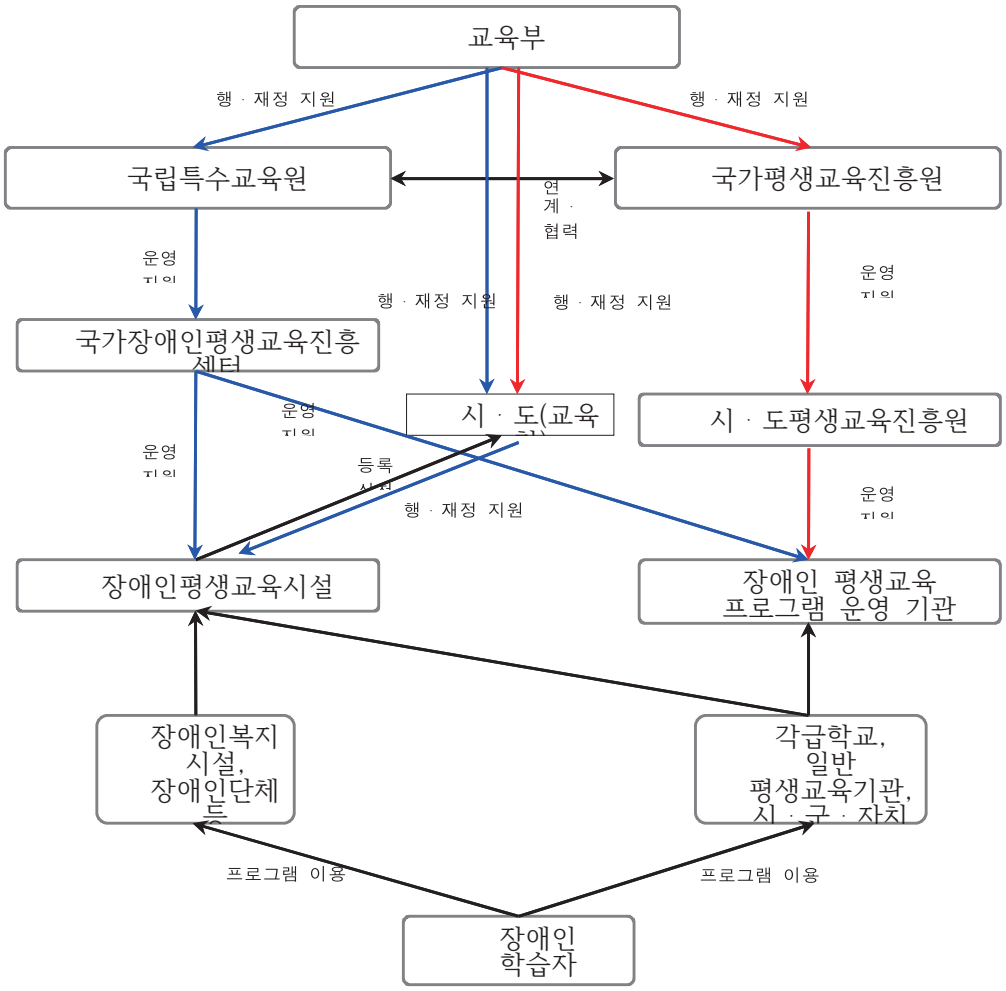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 평생교육시설 대부분은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평생교육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제안하였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후속 과제

1)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수교육의 한 분야가 아닌 일반 평생교육에 포함되는 정책으로서 전반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변화와 발전에 기반하여 작동되는 교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기존의 평생교육 정책에 완전히 포함시키기보다는 병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강순원(2013)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일반 평생교육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일반 평생교육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가 너무 열악하고, 장애를 고려한 지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기존의 평생교육 지원체계와는 별도의 병렬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여건을 확충하고, 장애를 고려한 전문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가 추가로 구축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도식화 하면 크게 기존의 지원 체계와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한 별도의 지원 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지원 체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시·군·자치구 평생학습관 등 일반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공기관"이라는 체계에 의해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원되는 체계를 말한다. 별도의 지원 체계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국립특수교육원 운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는 체계에 의해 지원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원 체계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운영할 경우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센터의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 개정「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전반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제21조의 2의 제3항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업무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로 그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도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정된「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개정된「평생교육법」에 따라 다양한 시설 또는 단체 등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의 일반 평생교육기관, 시·군·자치구 평생학습관, 각급학교 등 수많은 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기관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이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게 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면,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할 수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평생교육법」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에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포함시킨 바 있으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극히 최근에 들어 각 시·도별로 설립되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시·도에서 운영하는 연구원 또는 복지재단 등에서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서는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바 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직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반 평생교육과 마찬가지로 중앙 → 광역 → 기초와 같은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좀 이르다는 판단 때문에, 이 규정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시·도 수준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법률 개정 시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셋째,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개정된「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직접 운영

하는 곳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명시하고 있지만, 각급학교, 평생교육기관 및 시·군·자치구 평생학습관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이 법률에 따라 별도로 지정 또는 설치·운영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존의 평생교육기관 모두를 장애인 평생교육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기존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고, 학교형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대 규정되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성인 문해 또는 기초 교육, 학력보완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같이 발달장애인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시설, 대학,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단체 등 특정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평생교육시설로도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기존의 평생교육기관과는 달리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별도의 평생교육 제공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반 평생교육기관간은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에 대한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와 기존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다. 장애인 학습자가 이용 가능한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양할수록 장애인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일원화된 기관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양 축에서 각각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지원 체계는 일원화되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는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기존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심의 지원 체계는 이와 같은 체계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등의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

개정된「평생교육법」이 당초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실효성을 갖추려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제도가 법령에 따라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지난 2009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표 〉 연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및 전체 교육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2009 (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B)	B–A	연평균 증가액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C)	1,863	2,772	3,076	4,274	3,571	2,926	3,699	4,435	2,572	367
특수교육 예산	1,545,753	1,667,641	1,966,284	2,138,496	2,245,781	2,153,125	2,227,638	2,376,062	830,309	118,615
전체 교육 예산 (D)	38,698,867	38,595,975	41,618,722	45,752,654	49,643,947	49,986,533	50,325,564	51,225,455	12,526,588	1,789,512
전체 교육 예산 중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비율 (C/D)×100	0.005%	0.007%	0.007%	0.009%	0.007%	0.006%	0.007%	0.009%		

자료: 교육부(2009 ~ 2016).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재구성

표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8년 동안 전체 특수교육 예산은 8,303억여원, 전체 교육 예산은 12조 5,265억여원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25억여원 증가에 그쳤다. 2016년 현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87,950명이고 이를 특수교육 예산으로 나누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27,016천원(연간)으로 산출되지만, 장애성인의 경우 등록 장애인 수 2,490,406명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으로 나누면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1,780원(연간)에 불과하다. 이처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크게 성장 못했던 것이다.

이점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관련 부처와 국회의 반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일례로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위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바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의 지적 때문에 사업이 폐지된 바 있다. 또한 일반회계사업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이 '대학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였고, 때문에 이 사업도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으로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계측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부가 국고 차원에서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액의 격차가 큰 편이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각 시·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확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운영 경비는 국고로 편성하여야 하나,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이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양성 및 배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김기룡, 나경은, 2015; 서보순 외, 2015; 정인숙 외, 2013). 전문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방안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등 질 관리 지원 체계 마련 등이 제안되고 있다. 아쉽게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사 의무배치에 관한 규정만 제시하고 있을 뿐, 어떠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어떻게 얼마나 배치되어야 하는가 등 지원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거나 법률 개정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인력의 자격·역할·배치기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질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인력의 자격·역할·배치기준 방안은 정인숙 외(2013)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김기룡(2016)은 정인숙 외의 연구결과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3가지 유형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인력 양성과 배치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배치되어야 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인력의 자격, 역할 및 배치 방안을 제안하면 표 11과 같다.

〈표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인력의 역할, 자격 요건 및 배치 방안

구분	명칭	역할	자격 요건	배치
전문인력	장애인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조정, 연계 및 평가 •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상담,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등	•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의 평생교육시설 종사 경력을 가진 자로서,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과정(60시간)을 이수한 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 • 3과정 이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1인 이상 의무 배치
제공인력	장애인 평생교육 교 · 강사	• 프로그램별 교수학습 활동 • 교재 개발, 교내외 학습활동 기획 및 운영 등	•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평생교육 교 • 강사 과정(30시간)을 이수한 자	• 모든 장애인 프로그램에 장애인 평생교육 교사 또는 강사 의무 배치

구분	명칭	역할	자격 요건	배치
보조인력	장애인 평생교육 보조원	• 제공인력에 대한 교수학습 보조 및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학습 활동 보조	•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갖고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 보조원 연수 과정(30시간)을 이수한 자	• 장애인 프로그램별로 1인 이상 배치 권장

* 관련 자격: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일반교사 자격 소지자 등.

표 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인력은 크게 전문인력, 제공인력, 보조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문인력은 기존의 평생교육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며, 제공인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사 또는 강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보조인력은 제공인력의 교수학습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전문인력 자격 요건에 대해 다수의 연구에서 특수교사 또는 평생교육사를 제안하고 있으나(정인숙 외, 2013; 서보순 외, 2015),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의 평생교육사를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다만, 평생교육사 자격을 소지한 인력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인숙 외(2013) 등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별도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림직하다.

정인숙 외(2013)는 평생교육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225시간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225시간 연수 과정을 운영할 경우 약 30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연수 참가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좀 더 현실적인 연수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60시간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수 과정을 마련한 후 연수 시간 확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배치는 정인숙 외(2013), 서보순 외(2015) 등이 제안한 바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3개 과정 이상 운영 시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운영 프로그램의 주제 또는 교육 내용에 따라 수급, 배치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배치하면 된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할 수 있는 최소 30시간 이상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를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조인력 자격 요건은 기존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조건인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갖추고 30시간의 기초 연수를 받은 사람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치 기준은 장애인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자율로 하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1개 과정별 1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교육부 차원의 후속 대책 수립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중장기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교육부가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1~2년 이내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계획에 제시되어야 할 내용을 간략히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지 및 계속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기존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근거를 수정·보완하여 이와 같은 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교육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별 행정 조치 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내년부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산하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급선무이지만, 이보다 더 급한 것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계획안에는 비전, 운영 방향, 추진 전략, 세부 사업 내용, 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 사업 수행 장소(공간 설계),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관련 DB 수집 및 시스템 구축, 평가 방법, 소요 예산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어느 정도의 규모와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설치된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공간 임대료와 기능보강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로 연간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법률에 따라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5억원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2016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회 회의록),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운영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교형태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시민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등 교육내용별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설립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교육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설립될 수도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중도·중복장애인 등 특정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설립될 수도 있고, 대학 중심, 장애인 단체 중심, 장애인복지시설 중심 교육기관의 유형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설립될 수도 있다. 또한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관의 유형 등에 따라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도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발굴, 육성 및 관리 방안이 정책연구를 통해 수립될 필요가 있고, 단기간에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기존 시설)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신규 진입 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그 지원 내용과 관리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단기 양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새롭게 설치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문성을 갖고 장애

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와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단기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겠으나, 국립특수교육원의 기존 연수 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인력(교사 또는 강사)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과정 운영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계획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교육부의 책무를 고려하여 이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률이지만, 제10조(의사소통지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의사소통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26조(평생교육 지원)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규정한 것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부의 책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과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세부 사업 내용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부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지자체 수준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일반 평생교육 체계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평생교육 체계에서의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평생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에서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기존의 평생

교육 체계와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정책과의 일반 평생교육 업무와 특수교육정책과의 장애인 교육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원 계획을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로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한 민·관 합동TFT 구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5. 제언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된 장애인 평생교육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향후 5년 또는 10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지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기관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많이 수행된 바 있는 등 그 인프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과 관심도에 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수교육과 평생교육의 주변부의 위치에서 영세한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은 행정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명확했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행정에 대한 책임 주체는 보다 분명해졌으나, 예산 확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개정된「평생교육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면, 이제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또는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예산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이와 같은 예산 확보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 문제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안하여 입법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예산 추가 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역시 이와 같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에는 이와 같은 예산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초기 부처 내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및 구축에 관한 사항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평생교육통계에는 장애인 학습자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특수교육실태조사와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일부 다루고 있으나, 장애인이 어떤 유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용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태년 의원의 발의안에는 국가평생교육통계에 장애인에 관한 통계를 포함시키는 것을 조항으로 제안하였으나, 기존 통계 조사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일부 정책 연구 보고 자료와 학술 논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평생교육통계 조사 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관련 매뉴얼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 조사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0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김영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토론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김영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 시작하는 글

지난 주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다. 다른 지역에서 어느 특수학교의 전임 교장 선생님 조문을 마친 후 KTX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내려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탔다. 집에 도착하기 약 5분 전쯤 토론자는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렸더니, 그는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기사는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있는데 왜 일반 택시를 탔느냐고 물었으며, 토론자는 저녁 11시 전후에는 야간 팀 교대 시간이어서 연결될 확률이 낮아 장애인콜 택시를 타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었다. 택시가 토론자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여느 날과 같이 아파트 주차장이 좁아 '만차' 표시가 되어 있을 테니 경비실 앞에 잠시 차를 세우고 첫 번째 라인 앞까지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다. 기사는 곤란하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불과 몇 걸음밖에 안 되니 도와 달라고 다시 부탁했으나 택시 기사는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라 그렇게 도와 줄 수는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했다. 토론자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요금을 지불한 뒤 택시에서 내려 늘 가지고 다니는 흰지팡이를 가방에서 꺼내 혼자서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찾아 귀가했다.

장애인은 늘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만 이용해야 할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교통 수단을 별도로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만 타야 하고, 늘 불편과 불안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

아야 할까? 장애인은 모든 도로 환경과 대중교통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까지, 그리고 모든 시민이 장애인을 잘 이해하도록 인식이 개선될 때까지 오래 오래 기다려야만 할까?

그 날 김기룡 교수님의 발제 『평생교육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후속 과제』를 읽었고, 오늘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발제 내용에 대해 생각하던 중이었기 때문일까? 지난 토요일 밤의 경험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마련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2. 평생교육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찬성 이유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김기룡 교수님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안)」에 대해 동의한다.

첫째, 시행령 제4조제4호를 신설하여 장애인평생교육 기본계획·진흥정책의 수립·평가·개선 및 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두고, 이 조직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행·재정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일반 평생교육 체계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법 제20조의 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 기준, 등록, 운영경비 부담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시행령 제12조의 3을 신설하여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평생학습관에서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의 별표 2를 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정규직원 10명 이상일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여기서는 토론자가 위와 같은 시행령안에 찬성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형식 논리에 집착하는 대신 정책 수요자의 경험 반영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과 제도는 시대 흐름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발전해 왔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정의는 절대로 변화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평생교육의 개념이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분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하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0.02%, 발달장애인의 0.01%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입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제도 형성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당장에는 평생교육법 제2조를 개정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와 평생교육 기관 분류를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학교형태의 시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5%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평생교육의 6진 분류에 '장애인 자립생활교육'과 같은 영역도 신설하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이 진정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경험에 기반한 정책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법 시행령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중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이끄는 단기적인 정책 대안 제시

정책은 중장기적인 효과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나 도로 환경 개선과 같은 중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분명히 시급했던 것이다.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은 기본계획 수립과 그 시행을 기다리고만 있기에 그동안 너무 오래 동안 평생교육을 갈급해 왔다. 따라서 최소한 발제자가 제안한 수준의 시행령안 정도는 반영되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평생학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시행령안 마련을 통한 단기적인 정책 성과는 중장기적인 정책 성과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3) 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한 평생교육의 다원화 지향

분리보다는 통합, 특수성보다는 보편성, 다원화보다는 일원화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토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분리와 통합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닐 수 있다.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시대이지만 특수학교도 필요하다.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및 교육적 요구에 따라서는 특수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더 적절한 교육적 배치일 수 있다. 동일한 학생이 필요에 따라 특수학교도 다닐 수 있고, 일반학교도 다닐 수 있다.

보편성이 항상 특수성보다 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토론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을 맡기 전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시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기회 있을 때마다 표명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

관 소속 하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보다 시급하고 의미 있는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많이 경험한 결과 토론자의 생각이 바뀐 것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는 별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비스 전달 체계의 일원화를 지향할 필요는 있지만 기관 간 연계 협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요구는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적 특성과 배경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단일의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규정이 「평생교육법」에 포함된 것은 국가 책무성의 강화, 장애인평생교육 인프라 확충, 장애인의 상회통합 면에서 분명히 진일보한 법 개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일반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로 일원화할 필요는 없다. 일반 평생교육 체계가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보, 관련 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당장에는 장애인에게 특화된 평생교육 서비스를 개발·보급할 수 있는 기관도 확충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추가할 후속 과제

김기룡 교수님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②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확대, ③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양성, ④ 교육부 차원의 후속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후속 과제를 제안하였다. 토론자는 발제자의 제언을 지지한다. 여기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토론자도 몇 가지 추가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자료 개발·제작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습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상당 수 있고,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는 장애인용 학습 자료를 제작·판매하지 않고 있

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수어영상자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easy-to-read materials)', 점자자료, 확대자료, 데이지(DAISY) 자료 등 다양한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장애인대체자료진흥원'(가칭)과 같은 공공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르면 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다. 2009년 이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비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은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의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평생교육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장애 관련 모든 정책을 다루면서도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므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기구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지정토론

02

평생교육법 시행령(안)과 주제발표에 대한 입장

한용구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토론 2

평생교육법 시행령(안)과 주제발표에 대한 입장

한용구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특수교육법"의 평생교육관련 규정들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평생교육법"을 개정한 개정『평생교육법』이 오는 5월 30일 시행된다. 개정된『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규정들을 대폭 신설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의 입장에서는 무척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시기에 나경원 국회의원님 주최로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주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데에 대해서 약간 늦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필요한 토론회의 개최라고 할 수 있다.

본 토론자는 전국장애부모연대의 김기룡 사무총장의 주제발표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주요 논의 대상이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서『평생교육법』시행령(안)에 대한 김기룡사무총장님의 주제발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행령(안)과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기준 관련, 시행령(안)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구분과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김기룡 사무총장님의 주제발표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는데 개정된『평생교육법』에서는 하위법령에 규정하여야할 내용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평생교육시설 중 장애인 대상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시행령(안)에서와 같이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것을 위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과 설비에 대한 것이 시행령안에 포함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형구분까지 시행령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시행령안이 법제처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기룡 총장님의 주제발표문에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되지 않더라도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하여 유형구분을 하였다면 과연,시행령(안)과 같이 네가지로 유형을 구분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 기준을 밝힐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시행령안 제33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서 밝힌 네가지 유형이 이용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다른 법령에 의해 운영되어지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들을 나열 구분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주체에 의한 구분인 것 인지?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형 구분은 자칫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시행령안의 구분에 따른 3번째 유형인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 구분에서 성인장애인을 성인발달장애인으로만 바꾸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차이가 없다.

또한, 네가지 유형 구분하는 것이 과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다양성을 포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는 학교부설과 학교의 평생교육시설이 현재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수가 있는 복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와같이 네가지로 구분되어지면 복지기관에서 운영되어지는 장애인평생교육은 유형구분에 제외가 되는 것 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하여 유형구분을 하더라도 좀 더 논의가 이루어져서 시행령이 법령으로서 안정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제33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기준) ① 법 제20조의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성인장애인에게 문해교육 또는 학력보완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3.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성인장애인에게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4.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둘째, 유형구분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 관련

시행령(안)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과 설비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였다.(* 주제발표자 제안 제67조의3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실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라.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편의시설·설비

시행령(안)에서 시설 설치기준의 적절성에 대하여서는 현실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주제발표에서도 “시행령 제67조의 3항을 신설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설, 설비 기준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자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질적수준이 제고되기보다는 설치운영이 제한될 것이다.

제시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기준에 따른다면 시행령(안)에서 제시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센터의 기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립이 오히려 제한되어질 우려가 있다. 실례로 서울시에서 매년 3개소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응모한 결과 2016년도에는 서울시 기준인 500㎡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하지 못한 지자체가 다수

있을 정도로 지자체에서 공간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다.

세부적인사항으로서 “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실”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것인지? 전체면적이 300제곱미터인것인지? 아니면 교육실만 300제곱미터인지? 명확하지도 아니하며, “다. 도서 및 자료 500권 을 갖춘 자료실”의 기준의 경우에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서의 보유는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도서 500권의 확보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으며 도서 500권의 기준이 설립의 중요한 기준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현장에 있는 실무자로서 이 기준은 단지 현재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고민없이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규정하고 이는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만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5조에 따른 안전 및 편의시설, 설비의 기준에 따르게 기준을 정함으로서 오히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이 확대될 수 없게 만드는 시설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준이 바뀐게 아닌가 생각이 들며, 현재 전국에서 과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5조 별표2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 · 설비의 종류 및 기준(제5조 관련)

시설 · 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1. 보행로	가. 다음의 장소에는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연속된 보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문에서 주된 교사의 주 출입구까지 2)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에서 주된 교사까지 3) 교사와 교사 사이 나. 주 보행로 유효 폭은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2)에 설치하는 보행로의 경우에는 유효 폭을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휠체어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하고, 바닥면의 기울어진 부분은 그 기울기가 18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지형 등을 이유로 그 기울기를 18분의 1 이하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차도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연석 · 화단 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도와 분리되어야 한다. 마. 가목2) 및 3)에 설치하는 보행로에는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가. 통학차량이 주차 또는 회차하는 경우 보행로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승하차구역 끝 부분에 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교사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승하차구역 주변에 승하차구역임을 알리는 입식 기둥형 또는 벽면 부착형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휠체어 탑승자가 승하차 및 승하차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바닥면이 폭 4.5미터 이상(차량 주차 구역 3.3미터 이상, 승하차 대기 구역 1.2미터 이상), 길이 1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승하차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하고, 바닥면의 기울기가 50분의 1 이하이어야 하며, 바닥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승하차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교사 등의 주 출입구	가.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나. 진입구간은 가급적 별도의 경사로와 계단이 없이 설치하되, 바닥면이 기울어진 경우에는 그 기울기가 18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 문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손 끼임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유리문인 경우에는 부딪힘 방지를 위해 색 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 · 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4. 복도	가. 유효 폭이 2.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통행을 방해하는 고정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 휠체어 보관함, 재활도구 보관함, 소화기 보관함, 음수대 또는 신발장 등의 설비를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면에 매립하는 등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둥근 형태로 하거나, 별도의 충돌 방지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손잡이는 학생의 성장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2중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교실 출입문	가. 미닫이 또는 미세기 구조로 하고, 유효 폭이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문에는 문턱이 없어야 하고, 손 끼임 방지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 손잡이는 돌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에 투시 가능한 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반대편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계단	가. 계단 및 계단참(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은 제외한다)의 유효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단코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마감하고, 계단의 디딤판과 색을 달리하여 계단 모서리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계단 손잡이는 계단의 양쪽에 벽면 부착형 또는 난간 일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손잡이 끝부분이 옷소매 등이 걸리지 않는 구조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난간 1) 난간과 손잡이가 일체형인 경우에는 난간 살이 없는 판형 또는 난간 살 수직형(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난간 살 사이의 간격이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높이는 바닥면 기준 1.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계단참 및 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의 난간 높이는 바닥면 기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7. 승강기	가. 승강기 중 1대 이상은 그 바닥면이 폭 1.6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승강기 출입문 일부 또는 전부를 투명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출입문을 통해 반대편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 센서와 적외선 센서가 모두 있어야 한다.
8. 경사로	가. 경사로 유효 폭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경사로에 굴절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바닥면의 폭과 길이가 각각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경사로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통행자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벽면 및 난간 등에 충격방지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9. 긴급 대피공간	가. 건축물 구조를 고려하여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 또는 층별 공용 테라스 형태의 긴급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차량 및 구조장비 등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 및 구조이어야 한다.
10. 창문	긴급 상황 시 용이하게 바깥으로 피난이 가능하되, 평상 시 창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그 밖의 시설 · 설비	가. 실내 강당, 체육관의 무대 · 단상 또는 운동장의 구령대 등은 휠체어 이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경비실(수위실 및 안내실을 포함한다)은 교문이 잘 보이도록 교문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는 2학급당 1개 이상, 소변기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원휴게실, 탈의실, 목욕실, 및 학부모 대기실의 경우 각 1실 이상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 위 시설 외에 교원사택 등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필요한 시설 · 설비를 둘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셋째, 시행령과 주제발표에서 시행령의 별표 2 제2호를 신설하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2명이상 배치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담보도 무시 못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별표 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ㅇ 정규직원 1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1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입장에서 제언

시행령(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장애인평생교육의 주체가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이 담보되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주제발표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장애인평생교육에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저변이 확대되고 정부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이 강화가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시행령(안)으로 인한 변화에 기대를 갖게 하는 점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몇가지 아쉬운점과 시행령(안)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는 수준에서 수정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별표 2)에 대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입장에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은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사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지원인력가운데 제공인력으로서 관련자격인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와 의사소통의 증진에 필요한 언어재활사 등의 인력확보도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증으로서 장애인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이용자 비율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표에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립기준은 30명 기준으로 500제곱미터이다. 이와 같은 기준도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넓어 이와 같은 공간을 지자체에서 확보하기가 곤란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제약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지 않는 다면 이용 발달장애인에 따른 비율로 전체 면적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시도 지침에 따르게 한다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 보급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예, 이용자 1인당 16.5제곱미터)

셋째, 제33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서 등록 관청이 교육감으로 규정되어있는데 등록관청과 운영비 지원관청, 지도·감독 주무관청을 시·도(시군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단위 장애인에 대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수요 공급 관리는 시·도(시군구)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장애인평생교육 주무관청도 시·도(시군구)로 일원화 필요가 있으며, 개정령에 따라 시설로 등록 후에 현행 센터에 대한 지원체계(서울시 전액 지방비부담, 광역:기초지자체 90:10)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무부처(교육부)입장에서 비용보조에 관한 관건(국가보조금 예산 확보)은 해소된 상태이므로 지자체 주무관청 일원화는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규정인 별표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별표 2 2항 ㅇ 정규직원 1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1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별표 2 2항 ㅇ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의무적으로 둠 ㅇ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 소지자 및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두도록 함.(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언어재활사, 직업상담사, 수화통역사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재활을 돕기 위한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목적에 맞게 장애인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별표 4 2항 가. 전체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라.「특수학교 시설 · 설비 기준령」제5조에 따른 안전 및 편의시설 · 설비	별표 4 가. 이용 인원 1인당 16.5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가.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정원 30명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재 개정안은 정원과 상관없이 300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개별 이용자의 교육 공간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이에 개별 이용자에 대한 공간 확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이용자 중심의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됨. 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특수학교와 달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시설과 성격이 유사함. 특수학교의 설비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사회형 평생교육센터의 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지정토론

0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입장

박용연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감사

토론 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입장

박용연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감사

우리나라는「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평생교육법」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천명하고 국가 평생교육원을 두어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국민'에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드디어 장애인들도 국가 평생교육의 틀 안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오는 5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은 성년기에 접어든 중증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무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뚜렷한 퇴행현상을 보이는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상 전 생애에 걸친 여러 형태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욕구 중심 교육 서비스 제공은, 장애 자녀 당사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인 한 가정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토론자는 전공과 졸업을 앞둔 발달장애인의 부모로서 시행령(안)과 발제발문을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의 이용자로서의 입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1. 욕구조사의 필요성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2조의3(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서는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욕구 및 수요파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함에도 이를 규정한 조항이 빠져 있음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반드시 다양한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야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연구를 소개하여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우이구)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특수교육연구 제23권 제2호'에 담겨 있는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부모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원들 중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 했으며 성인기 자녀 부모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결과 중 다음의 〈표 3〉을 소개한다.

〈표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대영역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영역	M	SD	우선순위
기초문해교육	2.78	.681	4
학력보완교육	2.03	.762	6
직업능력향상교육	2.98	.659	2
문화예술교육	3.25	.644	1
인문교양교육	2.87	.643	3
시민참여교육	2.67	.747	5

이 표를 통하여 향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영역은 문화예술교육이 3.25, 직업능력향상교육이 2.98, 인문교양교육이 2.87, 기초문해교육이 2.78, 시민참여교육이 2.67, 학력보완교육이 2.03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영역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1순위, 직업능력향상교육 영역이 2순위, 인문교양교육 영역이 3순위, 기초문해교육 영역이 4순위, 시민참여교육 영역이 5순위, 학력 보완교육 영역이 6순위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그를 위한 장소 및 설비의 기준이 갖추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고 향후 확대 설치에도 중요한 단서로 활용 되겠기에 평생교육법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담기 위한 개정령안 안에 상기와 같은 욕구 조사를 포함한 국가차원의 발달장애인실태전수조사 방안과 구체적 방법을 함께 담았으면 한다.

2. 너무나 엄격한 설치 기준

(제33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기준) ① 의 2에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적시하고, 그 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5조에 따른 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에 둔 것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수준을 국가 차원에서 제고하고 안전 문제를 강화 시키려는 목적이라 이해하여도, 지나치게 엄격함은 물론 발제문에서 밝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시켜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개정 法意에도 어긋나 보인다.

이런 이유로 본 토론자는 유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만 적시 된「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5조(별첨)에 따른 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참고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의 여건 및 장애유형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제안한다.

학교부지에 학교를 짓는데 그것이 특수학교라서 절대로 안된다는 님비 현상으로 학교의 건립마저 힘겨운 현실에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확대 설치를 위하여 이 조항은 반드시 수정이 고려되어야한다.

3. 편리성과 접근성

우리 부모들은 학교를 졸업한 성인발달장애 자녀들이 오고가기 쉽고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전문가들로부터, 대기나 거절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 받기를 한결같이 원하고 있기에 오늘의 토론회 후 이 법의 시행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제 국가가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책무를 강화 한다고 하니 그동안 수영교습을 받기 위한 레인을 하나 배정 받는데도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 및 센터에는 특별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체육, 공연,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가칭 발달장애인프로그램 쿼터제」 도입을 제안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장애 지역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과 평생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계도하여 적절한 균형 속에 발달장애인도 평생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문화 컨텐츠를 경험하며 지역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부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이제는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 수혜자가 아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지정토론

04

평생교육법 시행령(안)과 주제발표에 대한 장애인야학의 입장

조민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

토론 4

평생교육법 시행령(안)과 주제발표에 대한 장애인야학의 입장

조민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

Ⅰ. 들어가며

2016년 5월 29일, 평생교육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었고 오는 5월 30일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이 통과 된 이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을 비롯한 장애인교육단체에서 교육부에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여왔지만 교육부는 평생학습정책과와 특수교육정책과 간의 업무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2월 임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준식 교육부장관에게'장애인평생교육 후속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와 장애인평생교육예산의 부족함'을 질타함으로써 교육부와의 하위법령 및 향후 지원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고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본 토론자는 주제발표자(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께서 언급하신 장애인평생교육이 장애인관련법령을 벗어나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 진입하여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지원체계가 만들어지고 지원될 것이라는 기대와 이러한 기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방향 및 후속과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본 토론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던 당사자로서, 장애인야학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로서의 고민과 향후 장애인평생교육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고민들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II. 입법예고 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지난 4월 11일(화)에 입법예고 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 등록절차 마련,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중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평생교육활성화에 대해서는 방안에서 언급토록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 등록절차 마련,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에 대한 의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두고, 센터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두어야하냐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두어야하느냐에 대해 장애인야학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많았었다. 물론 장기적이고 큰 흐름에서 본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전달체계를 일원화시켜 나가야하겠지만,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 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성장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였을 때, 국립특수교육원 내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분야의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와 정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평생교육진흥원 체계에 둘 경우 오히려 장애인평생교육의 양질의 확대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두고 인큐베이팅을 통해 자리를 잡은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로 두는 등 변화를 논의하는 것이 현재로서

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단,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예산과 인력, 시·군·구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연계방안은 향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제 기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주제발표에서 제안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반영의지를 오늘 토론에 참석한 교육부관계자 분들에게 확인을 하였으면 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 등록절차 마련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중심평생교육시설, △기타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하였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기준을 시설설비 및 운영비, 강사 · 행정사무 및 보조인력 인건비, 교재 · 교구 및 체험활동경비, 시설이용에 따른 이동지원경비, 종일제의 경우 급식 또는 간식 경비, 편의시설 및 발달장애인의사소통지원 등으로 각호에 명시하였다.

장애인야학과 가장 관련성이 깊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세부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성인장애인에게' 문해교육 또는 학력보완교육을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을 하였고 이는 기존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에 명시되었던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운영되었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기능을 현실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성인장애인에게'로 바꿈으로서 학교졸업 이후 문해교육과 학력보완교육이 필요한 성인장애인이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 · 설비기준의 경우 기존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32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 설비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였고, 시행령 제32조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규정을 바탕으로 편의시설 조항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설비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나을 수 있어 시설 · 설비 기준을 변화시키지 않았음을 밝히고 싶다.

다만, 지역사회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두가지 시설을 둠으로써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진입하지 못하는 장애인교육기관이 시설등록을 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타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여 운영기반을 확보한 뒤 발전을 통해 추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기존 서울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개요'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규모를 개소 당 최소 500㎡ 이상, 수업실 5실 이상(1개 실은 49.5㎡ 이상), 학습에 필요한 시설 설비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준 준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체면적을 서울시 기준보다 조금 더 하향한 300㎡ 이상이라고 명시하였고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준이 준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 「특수학교 시설 · 설비 기준령」제5조의 안전 및 편의시설 설비는 모두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준용하도록 안내기준을 만들도록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중심평생교육시설, △기타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구분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모두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각호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설설비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을 묻고 지원하게 한다면 안전설비와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는 기회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평생교육사 채용 및 배치에 대한 의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채용 및 배치기준을 정규직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평생교육사를 2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으로 명시하였는데 현재 평생교육사 양성체계가 장애와 무관하다시피 체계를 갖추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평생교육사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코디네이터 등의 자격기준이 따로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특수교육사, 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종사자에게 평생교육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지원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또는 시 · 군 · 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Ⅲ.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1.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육부의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관련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시·도 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평생교육 내에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논의과제로 설정되고 계획되고 방안이 마련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장의 종사자의 경험상, 위의 시행령 조항이 얼마나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먼저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규제심의 등의 문제로 시행령(안)에서 제외되긴 하였지만 지역 평생학습관의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 할당 비율 명시 등이 추후 검토되고 공론화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본 토론자는 밝히는 바이다. 장애인평생교육이 일반 평생교육에서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개입이 강화되어야만 기반이 제대로 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앞으로 계속될 교육부와의 지원방안 논의 속에서 꼭 다뤄지길 바라는 바이다.

2.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예산 확충에 대하여

주제발표자께서 언급하였듯이 장애인평생교육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4,435백만원 수준으로 장애인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연간 1,780원에 불가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사항은 특수교육발전계획, 특수교육운영계획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시 · 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간 편차는 점차 심각해

지고 있으며 예산 확충도 매우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을 중앙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장애성인평생교육예산 기준을 수립하여 조치해야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를 교육부가 책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달체계만 강화될 뿐 장애성인의 교육지원 체감은 낮은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예산 역시도 정부예산안에는 2017년 예산안에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아 이대로 간다면 국립특수교육원 내 직제개편과 센터 편성을 위주로 2017년을 보내고 기대했던 기능과 역할은 정체되어 실망감만 커질 것이기 때문에 주제발표자가 제안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내의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3.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강화 및 부서별 역할 확립 필요

교육부의 시행령(안) 입법예고 후 각 시 · 도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각호 기준이 너무 많다.' 내지 '각호 기준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론문을 통해 본 토론자가 강력하게 질책하고 싶은 부분은 평생교육법 개정 이전 특수교육법상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청과 시·도 교육청에서는 경비지원에 대한 각호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만 줄 수 있다.'또는 '인건비는 지원하지 못한다.'등의 답변을 내놓았던 기억을 돌이켜보기 바란다. 지자체는 각호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에 확대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시·도 청과 시·도 교육청 간 또는 시 · 도 청 또는 시· 도 교육청 내 주무부서를 둘러싸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행령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에도 이를 두고 '시청 사안이니 교육청 사안이니' 내지 '장애인복지과 사안이니 평생교육부서 사안이니'를 다툰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유기하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지자체에 모두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당부한다.

Ⅳ. 마치며

현재까지의 장애인평생교육은 예산, 인력, 연구에서 모두 취약한 분야이며 정치권과 행정부의 무관심 영역이었다. 평생교육법 개정·시행을 통해 앞으로 정부, 학계, 평생교육현장의 고민이 함께 모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오늘의 토론이 앞으로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방안에 대한 과제를 정리하고 논의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도 장애인평생교육을 책임지는 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논의에 참여하며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약속드리는 바이다.

지정토론

05

장애인평생교육 지원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1)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토론 5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1)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지정토론

06

장애인평생교육 지원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2)

양미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행정사무관

토론 6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2)

양미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행정사무관